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부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가. 기금의 운용취지에 맞게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의 생계자금을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의 용도로 변경함. (안 제3조제1호)

나.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함

(안 제4조제2항)

다. 융자금 대부이율 변경

(안 제5조)

- 융자이율을 연5%에서 연3%로 낮추어 융자받은 가구의 부담을 완화함

III.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을 위하여, 종전 운용해오던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동 폐지조례의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1996년 11월 18일 제정(시행일 : 1997. 1. 1)되었으며, 운영·관리는 금융기관(우리은행 수송동지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금조성 및 운용실적을 보면, 2005년도 10월말 현재 11억 2,121만 6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2002년 이전에 7억 1,700만원, 2003년에 1천만원, 2004년에 1천만원 등 2005년 10월말 현재 총 79건에 7억 3,700만원을 용자 지원하고, 이중 6억 8,200만원을 회수하여 현재 10억 6,621만 6천원(조성액의 95.1%)이 미사용 잔액으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은 용자실적이 2건에 불과하여 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바, 어렵게 조성된 기금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년도별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2005. 10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계	기 금 조 성		용자회수 (원 금)	계	경 비	용자지원	
		출연금	운용수익				건수	금 액
합 계	1,803,216	949,418	171,798	682,000	737,000	-	79	737,000
'02이전	1,333,628	949,418	84,710	299,500	717,000	-	77	717,000
'2003	233,243	-	25,743	207,500	10,000	-	1	10,000
'2004	135,582	-	30,582	105,000	10,000	-	1	10,000
'2005	100,763	-	30,763	70,000	-	-	-	-

- 운용수익 : 유휴기금 예치(저축금리) 및 대하금 이자(연 4%) 등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3조(용자대상)제1항에서 “생계자금”이 부족” 및 “생계가 곤란한 자”를 각각 삭제하고, “천제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을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으로 변경하였는데, 현행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기금용자를 위해 수탁금융기관에 대하된 기금에 대해서는 대부자가 용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연체를 하더라도 일체의 책임을 수탁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담보물(부동산)이 충분치 않으면 용자 상담과정에서 대부를 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에 기금관리를 위탁하는 현행 기금운용 방식에서는 생계곤란자 등 구호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동 조문을 삭제 또는 변경하더라도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호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조례(2005. 5. 13 제정) 및 재난관리기금(2005. 3. 11. 제정)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 안 제4조제2항에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안 제5조 및 제9조에서 융자금 상환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 3%로 인하 하였는바, 기금 융자한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하고 융자조건도 현행 시중은행 대부금리와 유사 기금의 융자기준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금리로 지원하는 등 조성기금을 원활히 운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 유사기금 운영현황(2005년 11월 현재)

조 례 명	지 원 대 상	융자한도	대부이율	상 환 기 간	주 관 과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기금 융자 등	가구당 1천만원 이 하	연 5%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자치행정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자활공동체 사업 자금대여 등	공동체당 7천만원 이 내	연 3%	5년 거치 5년 균분 또는 일시상환	사회복지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 시설 자금 융자 등	업체당 2 억원 이 내	연 3.5%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역경제과

참고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이 확인·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기금운용의 성과 및 평가시스템이 도입되고, 기금상호간에 설치목적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기금운영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IV.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기금관리의 위탁) ①구청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장과 약정을 체결하고 기금을 수탁

금융기관에 대하하되 대하금리는 금융기관 이 용자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대출 금리보다 1%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하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의 징수는 조례 제11조의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08.10)

③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정별로 처리 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산을 부담한다. (개정 2001.08.10)

○ 서울특별시종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조례 제0623호)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7.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사람

제3조(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식관련경비
2. 교육관련경비
3. 명절보상품
4. 월동대책비
5. 긴급구호비
6. 국경일, 보훈의 달, 경로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7.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조례 제615호)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난관련 장비구입(이하생략)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873호)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2006. 1. 1. 시행, 법률 제7664호)

제14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를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발전협력기금의 설치·운용) ①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지역발전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